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6. . . (제 회)	

별정우체국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부모가 양육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별정우체국법」이 개정(법률 제21551호, 2026. 4. 21. 공포, 2026. 10. 22. 시행)됨에 따라 양육책임을 불이행한 유족에 대한 유족급여의 제한 절차를 정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연금수급자 양육책임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 권한 반영(안 제18조의2제3항)
- 나.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유족급여의 감액절차 신설(안 제44조의2)
- 다. 부양사실 인정기준 개정(별표 2) 및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 시 고려사항 신설(별표 4)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정우체국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 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3항 중 “사망·이혼·생계유지 여부”를 “사망·이혼·생계유지 또는 양육책임 여부”로 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유족급여의 감액) ①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하 이 조에서 “급여제한심의대상자”라 한다)에 대해 유족급여의 제한을 신청하려는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의 유족은 심사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금관리단에 신청해야 한다.

1.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급여제한심의대상자의 양육책임 불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② 연금관리단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급여제한심의대상자로부터 양육책임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조사한 후 그 결과를

제7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 서류와 함께 제66조에 의한 급여심사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③ 급여심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신청서 등을 받으면 급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제한 여부와 감액비율을 결정한다.

④ 급여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급여제한 여부와 감액비율을 결정하면 그 결정서를 신청인, 급여제한심의대상자, 연금관리단에 보내야 한다.

⑤ 연금관리단은 제4항에 따라 결정서를 받으면 그에 따라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제4항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급여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급여제한심의대상자와 같은 순위자가 있는 경우: 같은 순위자가 한 명인 경우에는 그 순위자에게 전액 지급하고, 여러 명인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

2. 급여제한심의대상자와 같은 순위자가 없는 경우

가. 급여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다음 순위자가 한 명인 경우에는 그 순위자에게 전액 지급하고, 여러 명인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

나.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미지급

⑥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을 판단할 때에는 별표 4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양사실 인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유족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부양사실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2(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①·② (생 략)	제18조의2(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연금관리단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급권의 변경 또는 소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수급자의 <u>사망·이혼·생계유지 여부</u>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 ----- ----- ----- <u>사망·이혼·생계유지 또는 양육 책임 여부</u> ----- -----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44조의2(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유족급여의 감액) ①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하 이 조에서 “ <u>급여제한심의대상자</u> ”라 한다)에 대해 유족급여의 제한을 신청하려는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의 유족은 심사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금관리단에 신청해야 한다. 1. <u>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u>

2. 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유족의 대표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급여제한심의대상자의 양육책
임 불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② 연금관리단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급여제한심의대상
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급여제
한심의대상자로부터 양육책임 이
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조사한
후 그 결과를 제7항에 따른 신청
서 및 첨부 서류와 함께 제66조에
의한 급여심사이사회에 보내야
한다.

③ 급여심사이사회는 제2항에 따
라 신청서 등을 받으면 급여심사
이사회 의 심의를 거쳐 급여제한
여부와 감액비율을 결정한다.

④ 급여심사이사회는 제3항에 따
라 급여제한 여부와 감액비율을
결정하면 그 결정서를 신청인, 급
여제한심의대상자, 연금관리단에
보내야 한다.

⑤ 연금관리단은 제4항에 따라 결
정서를 받으면 그에 따라 급여제
한심의대상자에게 급여를 산정하

여 지급한다. 이 경우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제4항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급여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급여제한심의대상자와 같은 순위자가 있는 경우: 같은 순위자가 한 명인 경우에는 그 순위자에게 전액 지급하고, 여러 명인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

2. 급여제한심의대상자와 같은 순위자가 없는 경우

가. 급여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다음 순위자가 한 명인 경우에는 그 순위자에게 전액 지급하고, 여러 명인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

나.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미지급

⑥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을 판단할 때에는 별표 4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별표 2] <개정>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에 의한 부양사실의 인정기준
(제2조의3제1항 관련)

대상자	인정 기준
가. 배우자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배우자인 경우 : 인정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배우자가 아닌 경우 :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판결에 따라 사실혼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
나. 법 제2조 제2항제1호의 자녀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자녀인 경우 : 인정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자녀가 아닌 경우 :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판결 등 법원의 재판에 따라 친자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
다. 부모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부모인 경우 : 인정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부모가 아닌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 가.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같았던 경우 나.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달랐던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의 주소에서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취학·요양·주거의 형편 또는 근무형편 등으로 주거를 달리하고 있었으나 생활비·요양비 등 생계의 기반이 되는 경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법 제2조 제2항제2호의 자녀·손자녀 및 조부모	1.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같았던 경우 : 인정 2.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달랐던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 가.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의 주소에서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취학·요양·주거의 형편 또는 근무형편 등으로 주거를 달리하고 있었으나 생활비·요양비 등 생계의 기반이 되는 경제적인 지원이 행해지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4] <신설>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 시 고려사항
(제44조의2제6항 관련)

대상자	판단 시 고려사항
부모	1.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이 미성년이었던 기간(생후부터 19세가 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동안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같이 하였거나,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달랐던 경우에는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 2.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이 미성년이었던 기간 동안 양육비 등 생계의 기반이 되는 경제적인 지원을 한 기간 및 정도 3.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이 미성년이었던 기간 동안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에 대해 범죄행위,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하여 부모로서의 보호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및 위반 정도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연 락 처	(044) 200 - 8189